

『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승수 의원 외 1명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의회운영에 관한 직무와 그 소관사항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된 바,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대한 규정
(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
5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‘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’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,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대한 해석에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됨